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3002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3. 07. 0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10. 04.

http://www.jihwanfamily.com munkuk11@naver.com

[지환이네왕족발]

정 보 공 개 서

[지환이네왕족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지환이네왕족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FNCY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96 (대명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53 - 657 - 070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 -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총무부 / TEL : 053 - 657 - 0708



목 차

Ι.	가맹본부의 역	<u> </u> 반 현황
Ι.	가맹본부의	『지환이네왕족발 』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Z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지	의 부담14
V.	영업활동에 1]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약	g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4(
VII.	가맹본부의 >	1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대한 설명 40
IX.	가맹본부의 경	영점 현황48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 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년	브랜드	주 소				
	지환이너	왕족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96 (대명동)				
지환이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		대표팩스번호	
왕족발	개인사업자		2001.12.20.	문정국	053-657-0708	_	
	법인등록번호	해당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514-23-2804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 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TI SLOII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남길 42	-2 (대명동)
(대표)	지환이네 왕족발	지환이네왕족발	/EDIA 印基朴GEN	Y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पाम)			문정국	053-657-070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_	_	_	_
가맹본부가 계열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_	_	_	_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_	_	_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_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지환이네왕족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지환이네왕족발	
상 호	지환이네왕족발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ELTHE	등록번호(일자) 4102483970000(2013.01.03)
광 고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사항 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MY Alum Afamal II II amd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1,966	142,864	29,102	1,260,349	93,055	91,736
2022년	275,182 ^{OF}	REA FA!P880AI	PE 163,4010N	1 ,087,911	111,985	80,098
2023년	380,276	172,920	207,355	1,612,220	164,397	140,213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검 어 ㅂ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VI B	E 77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문정국	대표	2001.12. ~ 현재	대표	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UN	임원=	누(명)	TIQIA/III\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0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바로 전 3년간 [지환이네왕족발] 이외의 가맹사업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م مرکز م	가맹점 상호	2012.08.22. 출원	출원번호 4120120028502	ᄆᅒᄀ	2022 01 02	
المالية	등으로 사용	2013.01.03. 등록	등록번호 4102483970000	문정국	2023.01.03	

- ▶ 당사는 [지환이네왕족발] 상표 출원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 이니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지환이네왕족발]가맹사업 현황

1. [지환이네왕족발]을 시작한 날: 2014년 09월 2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1년 12월 20일)

2. [지환이네왕족발]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환이네	TISLOULIOL조바	문정국	2014.00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96
왕족발	지환이네왕족발	正包玉	2014.09. ~ 현재	(대명동)

3. [지환이네왕족발] 업종

영업표지	업종						
지환이네왕족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시선이네당독달	하고고한수거래ㅈㅈ	으 돼지족발					
		or month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바로 전 3년간 사업년도 말 영업 중인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시크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2	1	1	2	1	1
서울	_	_	-	_	_	-	_	_	-
부산	_	_	-	_	_	-	_	_	_
대구	1	_	1	1	_	1	1	_	1
인천	-	_	-	_	_	-	-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	_	_	-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71.01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2	2	_	1	1	_	1	1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 수

당사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2021년 2 0 0 0 0 2	
"4000000000. 100"	0
2022년 2 0 0 1 0 1	-1
2023년 1 20 0 1 0 1	0

6. [지환이네왕족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지환이네왕족발]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千七	경오/이금	오月포시			2021.12.31.	2022.12.31.	2023.12.3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



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		비고
	JOOT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	해당 없음	_	_		_		5곳 미만
서울	_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부산	-	해당 없음		-		-		5곳 미만
대구	-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인천	-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광주	-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대전	-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세종	-	해당 없음		_		-		5곳 미만
경기	-	해당 없음		-		-		5곳 미만
강원	-	해당 없음		_		-		5곳 미만
충북	_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충남	_	해당 없음		-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전남	-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경북	-	해당 없음		-		_		5곳 미만
경남	1	해당 없음		-		_		5곳 미만
제주	-	해당 없음		_		_		5곳 미만

- * 매출액은 가맹점당사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 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지환이네왕족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2,568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변	<u></u> 호	관리	믜 가맹점수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		수령권한		
			·			

10. 광고·판촉 지출 백역구고정거래조정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당사는 직전사업년도(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쪽을 참고하십시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	비고		
ᅮᇎ	구 건	기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01 17
합계	(비공개)	-	80,311	_	_	-
광고	_	-	_	_	_	-
판촉	_	-	_	_	_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성당지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42-23	053-651-0171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농협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ightarrow$ ② 농협방문 $ ightarrow$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ightarrow$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농협은형 없는 시		농협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계좌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게돠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게열시 필요서류	대리인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글포시ㅠ	개설시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국 중 거리 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현재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 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 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천원, VAT포함)

구 분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แฉ
	총계	24,200				
가 맹 비	소계 1.가입비 2.매뉴얼/인력지원 대가	2,200 1,100 1,100	계약 체결 시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점포실사 -오픈 및 운 영을 위한 정보 및 자 료제공 -오픈일 인 력지원
교 육 비	기술전수 및 개점 전 교육비	22,000		교육 실시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실시 이후 반환 안됨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 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มอ
보증금	3,000	계약체결 시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 증금으로 잔존 채무, 손해배상 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2,200
기술전수 및 개점 전 교육비	22,0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합계	27,200
	II respons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66㎡기준 (약 20평)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61,600	3,080		_	매장상황 및 점주 선택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비공개)	33,000	1,650	-계약시: 40% -중도금: 40% -완료시: 20%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비공개)	6,600	330	-계약시: 100%	공사 전 계약취소	-
주방집기 및 그릇, 의·탁자류	가맹본부	19,8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
판촉 및 홍보물	가맹본부	2,200		-계약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전기/가스 증설, 인허가 등의 비용 등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는 등 당사와 협의하여 [지환이네왕족발]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별도사항

* 추가간판공사,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 설비, 냉난방기, 식기세척기 및 진공포장기, 각종 인허가

※ 유의사항

-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도표상 판촉 및 홍보물은 적정한 도매가격(실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비고
가매하마자	점포 미보유 시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



점포 보유 시 : 최소 점포 기준 66㎡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종업원	피성년후견인ㆍ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만국공정거래조정원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 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 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점 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1을		교육 실시 이후에는	



교육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반환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에 따 른 비용	가맹본부	BI · 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시가 부담 하고, 귀하의 기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히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영업표지 변경 시	변경설치 된 이후에 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33만원	익월 01일에 자동이체로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 으로 반환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청구	교육실시 10일 전	교육실시 후 반환 안됨	
점포환경개선	(협력업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36페이지
비용	체)	제외한 나머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시 부담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 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 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 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



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사업자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 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새 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교육비 외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은 없습니다.

4)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지환이네왕족발]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환이네왕족발]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합니다.
-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일, 규정집, 홍보매뉴일, 전산 및 매장관리솔루션,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 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u>만국공정거래조정원</u>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당사는 가맹계약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운영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에 맞는 물품을 직접 조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 등이 제공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지환이네왕족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_				
	7	9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2) 당사가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배우자						
사용인 (임원)						
:	:	:	:	:	:	
	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왕족발(국내산)			
냉채족발	왼쪽에 기재된	1 회 위반: 구두경고	
불족발 KOREA FAII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RTRA다만, 가맹점의 AGE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쟁반국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일부	상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	
보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기술전수하여 제조된 물품을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가	당사가 기술전수하여 제조된 제품을 경쟁업체	1회 위반 : 구두경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	기술전수하여 제조된 제품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구고자거래조저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 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족발류				
수제왕족발(앞다리)	49,000			
수제왕족발(앞다리 반)	34,000			
수제왕족발(뒷다리)	42,000			
해파리 냉채족발	39,000	변경시 월별 서면 통지	2023년 01월 기준	
반반세트(앞다리반+보쌈)	52,000			
불족발 추가	20,000			
보쌈류				



수제보쌈(中)	40,000
수제보쌈(小)	35,000
기타	
쟁반국수	10,000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족발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지환이네왕족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으로 영업지역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 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 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의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 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지환이네왕족발'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기와 같은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 침해문제는 해당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 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 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ATION AGENCY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근다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7%	83%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지환이네왕족발]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시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 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	
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	
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	
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다만,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되며 갱신비가 발생함)	b 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4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KORF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6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 부하는 경우	제 15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2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 는 경우	제43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6조	제35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하 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 을 저해하는 경우	제27조	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7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 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27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 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제29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24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14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 이 거부하는 경우	제32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33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3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mark>하</mark> 는 경우	제39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 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 14, 19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35조 1항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력(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다. **당사/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 <mark>도</mark>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제35조 2항
당하는 경우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된 경우고 정 거 라 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 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	
치하는 경우	제35조 4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 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 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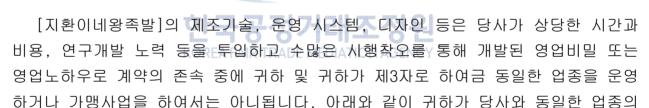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 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 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	-	교육수료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_	-	교육수료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มอ
일반인에게 왕족발 등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업종	해당 없음	문의 : 당사 (TEL 053-657-070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지환이네왕족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사업자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문의 : 당사



TI O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TEL 053-657-0708)
자율	휴업할 수 없음	(TEE 033 037 0700)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 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RADE MEDIATION AGENCY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제품 제조상태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상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감독 항목에 대한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정기적 또는	문의
서비스 상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쌍방이 서명 기록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 → 완료	부정기적 방문	(053-657-0708)
회계장부열람	기급에에 가장인 [에서 보면 기원표		
매장청결상태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그성경	광고성격 부담		분담절차	비고	
ㅜ굔	272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도급을자	01.77	
	브랜드광고	50%	50%	산출의 근거를	전국광고(TV,라	
전국광고	서비스/상품광고	JU/0	(전체가맹점)	서면을 통해 제시	디오, 5대 일간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 등)	
지역 광고/판촉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광고/판촉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 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TR판촉 활동TION AGENCY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 지, 카달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지환이네왕족발]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 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



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상법 제168 조의8 제2항에 의해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로열티 등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 준수의 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는 당사가 가맹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귀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당사의 영업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 5.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결리는 시간은 약 41 ~ 48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포함/66제곱미터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41~48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홈페이지문의,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가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맹거래사의 자 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가맹금 예치 안내	정보공개서 제공시 동시 시행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KOREA FAIR TRADE ME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 줄링 확인	DIATION AGENCY 3일	IV. 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점포계약	-입지선정 및 상권조사 -점포계약	10일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수	-인테리어 공사 실시 -간판제작	15일	
교육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15일 포함 총 20일)	5일	
초도물품 입고 등	-초도상품(각종 제품 등) -초도비품 및 소모품, 오픈행 사 등	2일	
점포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 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되는 실비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 당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 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오디오 구입비용은 별도입니다.

2. 분쟁해결 절차



-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 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1) 점포환경개선 사유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한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및 비율

구	분	구체적 내용	비고
항	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체리어 공사비용(집기·장비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③ 집기·장비교체 비용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비	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③ 집기·장비교체비용: 20% 부담	



3) 구체적 지급절차

구 분	구체적 지급절차	비고
일시불 지급 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 할 지급 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있는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 급 가능

4) 비용부담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100만원 한도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판촉지원	가맹점의	없음	가맹계약기간	판촉기획에	



	판촉행사시 판촉기획지원	(전 가맹점에 해당)		소요되는 비용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A FAI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053-657-070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당사 (053-657-0708)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지환이네왕족발] 가맹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 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지환이네왕족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신규교육)	제조기술 전수 및 개점 전에 필요한 제 반 교육	이론/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정기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 비스기법 등	이론/실습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30일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필수 교육
비정규 교육	서비스제고 교육 신메뉴 교육	이론/실습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4일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필수 교육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R및 FILI 용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지환이네왕족발]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신규교육)	20일 (1일X8시간) (총 160시간)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3시간	실비	외부 강사 초빙시
비정기교육	3시간	실비	추가 실비 발생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 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대구	지환이네왕족발 본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96(대명동)

상기 직영점 지환이네 왕족발 본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한국22년 7개월 라조정원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612,22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 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53-657-070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jiwhanfamily.com 또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제표(2023년~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및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고정거래주정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KOREA FAIR AURICA

수령확인서(가맹본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령확인증

수령확인서(가맹희망자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